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2년 10월 26일 (수) · 주간제 43호 · 통권 제 1594호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지원  
 1594호 · 통권 제 1594호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지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2/10/26 통권 1594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는 변설가가 아니다

### 소득세 · 법인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 비영리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의 불이익(상징법 규정 등)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현금영수증관련 절세방법
- 「소득세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 · 불공정 탈세 혐의 검증 (99명 세무조사)
-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사용자 대가에 대한 다툼시 법원 판결로 대가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는 최종 판결일이 공급시기임 (p.14)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일반개인과개인사업자의 소득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등 증빙>

각종소득	매입대금, 소득지급자, 온라인송금지급	매출, 소득받는자, 소득증거
근로소득	6개월 단위 간이지급명세서, 1년 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신고서, 통장입금
퇴직소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신고서, 통장입금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매월 제출)	원천징수로 종결, 통장입금
사업 소득	부가세 과세사업	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부가세 면세사업	매입계산서
	전문적 면세사업	매출계산서, 사업자현황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이자 · 배당소득	3.3% 원천징수,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매년지급명세서, 사업소득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서, 통장입금
이자 · 배당소득	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 단위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신고(금융소득합산)
연금소득	지급명세서(매년 단위)	종합소득신고, 통장입금
기타소득	매월 8.8%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종교인소득은 매년 단위	소액은 분리과세, 거액은 종합소득신고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사정보  
02-829-7575

#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94호 / 주간 43호

2022. 10. 26. (수)

· 발행인 : 이윤선  
 · 제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일반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등 증빙	표지
긴급시사해설	비영리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의 불이익 (상증법 규정 등)	2
CEO에세이	CEO는 변설가가 아니다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특정금전신탁 회계처리 - 노동조합에 지급금액 - 법인가간 대금 정산 방법 확인 요청 - 계열사 간 용역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6 7
눈에 맞는 절세미인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현금영수증관련 절세방법	8
매일 절세재무요점	-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2023부터 적용 예정) - 법인세 개정 계산사례	10 11
직장인 Survival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12가지 ①	12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사전법규재산-369, 2022.03.30) -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8155제20항 및 소득령8156조의 2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재산-399, 2022.04.12)	13 14
세정뉴스와 해설	모바일 실시간 소득파악 서비스 전면확대... 사업자 52만명 혜택	15
마케팅 Tax consulting	사용료 대가에 대한 다툼시 법원 판결로 대가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는 최종 판결일이 공급시기임	14
세무정보	-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고액자산가들의 능동적 불공정 탈세 혐의 검증 (99명 세무조사) - 실시간 소득파악 (RT)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16 18 27 37
회계정보	-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41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 비영리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 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의 불이익 (상증법 규정 등)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개념, 구분	비영리 공익법인의 정의, 공시서류 · 공시의무 불이행의 가산세 등	조문규정
공익법인의 정의	종교, 자선, 학술, 초 · 중 · 고등교육학교, 유치원 경영,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사업, 장학 · 교육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의 혜택	외부에서 받는 기부금 · 자산수증에 대해 법인세 과세 제외, 상속세 · 증여세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기부자 등의 혜택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증여세 · 상속세 과세 제외 (출연지분 5% 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결산서류 공시 등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기부금 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 명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장부작성 비치 등	매년 출연받은 재산과 공익사업 운용내용의 장부작성 · 증빙 비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외부세무 확인	매년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회계사 · 세무사 · 변호사)의 세무확인 검증받음 : 공익사용, 의무사항, 사업의 적정성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

외부회계감사	매년 외부회계 감사 수감의무 (총자산 100억 미만+매년 수입금액 50억 미만 +출연받은 재산 20억 미만은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확인·감사 불이행	외부세무 확인, 장부작성비치, 외부회계감사 불이행 가산세 : 당년도(수입액+출연액)의 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5항
사용계획 미제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진도의 보고서 미제출 가산금 : 미제출, 불분명 해당 상속·증여세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오류공시시정 불이행	결산서류 미공시, 공시내용의 오류 (공시·외부감사 시정요구에 불응·불이행시) : 자산총액의 0.5% (자산규모 5억 미만은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1항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14일 (금)	10월 17일 (월)	10월 18일 (화)	10월 19일 (수)	10월 20일 (목)
미 달 러 (USD)	1427.00	1428.90	1436.60	1425.60	1420.60
일 본 엔 (JPY)	968.87	961.67	964.10	955.82	948.11
영 국 파 운 드 (GBP)	1616.22	1604.37	1631.12	1617.77	1591.78
캐 나 다 달 러 (CAD)	1037.97	1030.58	1047.58	1038.46	1031.48
홍 콩 달 러 (HKD)	181.79	182.03	183.02	181.61	180.98
중 국 원 (CNH)	198.74	198.79	199.25	198.12	196.21
유 로 화 (EUR)	1395.04	1391.03	1413.83	1406.78	1387.07
호 주 달 러 (AUD)	898.72	888.20	904.41	901.34	889.93
싱 가 폴 달 러 (SGD)	997.31	1002.77	1010.91	1004.12	996.60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04.17	303.89	304.59	302.29	300.97

# CEO는 변설가가 아니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마이동풍(馬耳東風). 말 귀에 동풍 즉 봄바람이 스쳐간다는 뜻이다. 남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벽창호를 꼬집는 말이다. 이는 중국 당나라 시선(詩仙) 이백(李白)의 탄식이다. 아무리 좋은 시를 짓더라도 세상 속물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개탄한 다음 이렇게 노래했다.

세인문차개도두(世人聞此皆掉頭)-세상사람들 이 말 듣고 머리 흔드네/유여동풍사마이(有如東風射馬耳)-‘마치 동풍에 쏘인 말의 귀처럼’.

반면에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말이 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한다는 말이다.

석가가 어느 날 여러 제자들을 영산(靈山)에 불러모았다. 그런 다음 연꽃 한 송이를 집어 들고는 약간 비틀어 보였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다만 가섭(迦葉)만은 뜻을 알아차리고 싱긋 웃었다. 그러자 석가는 가섭을 보고 말했다.

“나에게는 마음의 덕, 번뇌를 벗어나서 진리에 도달하는 마음, 번치 않는 진리, 진리를 아는 마음 그리고 마음으로 통하는 뜻이 있다. 이것을 다 너에게 전하노라.”

인간 역사상 최상의 말씀이고 최상의 경청이 아닐 수 없다. 최상의 커뮤니케이션 본보기라 하겠다.

## 조조는 변설가, 유비는 경청자

CEO의 지도력은 웅변보다 경청에서 나온다. ‘웅변은 은(銀)이요 침묵은 금(金)’이란 속담도 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는 피주머니에 대단한 변설가였다. 또 용맹스런 장수였고 독재자였다. 그러나 유비는 그와 달랐다. 변설가라기보다 경청자였으며 겸손했다. 제갈량을 얻어 경청하기 위해 삼고초려를 마다하지 않았다. 권력을 움켜쥐기보다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래서 휘하에는

관우, 장비, 조자룡, 마초, 황충 그리고 제갈공명같은 기라성 같은 인재가 모였고 그들은 빛나는 활약들을 했다. 그래서 무명인사에서 모두 영웅의 반열에 오르고 삼국지에 주인공들이 되었다.

미국의 거함 조타수였던 두 CEO도 훌륭한 경청자였다. GE의 전 회장 잭 웰치는 요란했다. 20만명을 해고하였기에 ‘중성자탄 잭’이었다. 그리고 ‘워크아웃 잭’이었기에 그는 훌륭한 토론자요 경청자였다. 노자를 심취했던 GM의 전회장 잭 스미스는 조용히 모든 인재들의 말을 경청한 CEO로 유명했다.

두 사람 모두 현대 경영의 귀재였다.

## ‘경청하는 CEO’ 되길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제팀장의 인선 기준에 대해,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통합과 조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 했다.

그 통합과 조정능력은 갈등과 이견을 가진 이해 당사자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것 자체가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한다.

직업상 여러 CEO로부터 많은 난제들을 듣곤 한다. 그런데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들 CEO는 ‘신뢰할 수 있는’ 경청자 앞에서 스스로 정리하고 해답을 얻는 신묘함을 발휘한다. 바로 최고의 컨설팅이란 경청이다.

컨설팅(consult)란 단어의 뜻 자체가 ‘~의 의견을 듣다’가 아닌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똑같은 이치로 CEO는 휘하 부하들의 호소와 이견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어려운 통합조정을 해결하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CEO는 CCO(Chief Consulting Officer)다.

### 특정금전신탁 회계처리

**Q** 기업 계좌 관리계정명을 보통예금,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는데,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MMT(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A**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구체적 금융상품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목적에 따라 단기 금융상품이나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노동조합에 지급금액

**Q** 회사 노동조합에(노동조합계좌번호)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형식으로 금액을 지급시 접대비 인지요? 아니면 복리후생비인지요?

**A**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금액은 복리후생비는 아니고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인간 대금 정산 방법 확인 요청

**Q** 당사A의 일부사업부를 물적 분할 후, B법인에 양도하였습니다. 분할하기는 하였으나, 판매처 중 온라인 법인 이관하는데 시간이 걸려, 분할 후에도 A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역) 및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고, B법인에 대금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B사업자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받고, B법인으로부터 대금 입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매입은 판매수수료로, 매출대금 차감하고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음)

1. A와 B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2. 발행대상이 아니라면,

1) 매출 : A는 기타매출 마이너스 신고하여, 결국 매출 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 B는 기타매출 신고하여 매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 2) 매입 : A법은 매입불공제로 처리하고, B법인은 증빙없이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비용처리하면 되는지?

A

|| 분할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A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대금수수하면 안되고 해당 매출 세금계산서발급 및 대금수수를 B법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계열사 간 용역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Q

|| 당사는 계열사와 용역거래를 통해 업무지원을 받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용역 내용 :

- 당사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개선 활동(시제품 제작) 및 영업 업무 지원
- 당사에도 해당 팀들이 별도로 존재하나, 당사의 필요성에 의해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지원을 받고 있음
- 해당 계약은 별도의 이윤이 없이, 실비 정산만을 하기로 합의함
- 해당 판매 제품은 계열사(용역을 제공하는)와 전혀 상관 관계가 없음

|| 2. 질의 :

- 당사는 해당 거래가 비록 이윤이 없더라도 당사의 목적에 의하여 진행 된 계약인 관계로 별도의 용역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A

|| 계열사간 거래라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현금영수증관련 절세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현금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나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금액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법정증빙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에 반영시킴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잘못 발급받아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알아두면 좋을 현금영수증관련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코드번호 010 - 000 - 1234를 기억하자

현금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을 때 마땅히 불러야 할 번호가 생각나지 않거나, 회식이라도 하고 현금 결제할 때 누구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 등은 우선 코드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010-000-1234는 국세청이 지정한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용 번호인데, 이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등록이 되는 한편, 신청인 명의로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따라서 가맹점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지참한 사람이 회사나 집으로 돌아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사명이나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을 등록 하게 되면, 등록된 명의로 현금 결제 내역이 등록된다.

010-000-1234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회사명이나 소비자 개인명의로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려면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법인이나 개인으로 로그인하고, ② 로그인 후

에 조회/발급 메뉴에 있는 ‘자진발급분사업자등록’ 메뉴를 클릭한 뒤, ③ 거래금액과 010-000-1234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거래일자를 입력하여 조회한 후, 등록하면 된다. 새롭게 등록된 내용은 2-3일 후에 확인이 가능하다.

##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 방법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있어 개인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법인이나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출증빙 및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줄 방법이 있으니 바로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이다.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이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법정지출증빙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후, 조회/발급 메뉴 중 현금영수증수정 메뉴의 하위메뉴인 사업자용 용도변경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① 변경전 자료조회 화면에서 용도변경 기간을 참고하여 조회기간을 선택(용도변경 기간을 경과한 거래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정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별도 연락), ② “조회하기” 버튼 클릭, ③ 용도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2023부터 적용 예정)

(단위 : %, 기획재정부)

과세표준	현행		개편 후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3억원 이하	0.6	1.2	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8	1.6	0.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2	2.2	1.0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1.6	3.6	1.3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2	5.0	2.0
94억원 초과	3.0	6.0	2.7



### 국세청 제공 부가가치세 신고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 PC방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부석 자료



## 법인세 개정 계산사례

사례 1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 : 현행대비 △30백만원(△37.5%)
	현행 8,000만원 * (2억원×10%) + (3억원×20%)
	개정안 5,000만원 * (5억원×10%)
사례 2	과표 10억원 중소·중견기업 : 현행대비 △30백만원(△16.7%)
	현행 1억 8,000만원 * (2억원×10%) + (8억원×20%)
	개정안 1억 5,000만원 * (5억원×10%) + (5억원×20%)
사례 3	과표 4,000억원 일반기업 : 현행대비 △2,980백만원(△3.3%)
	현행 905억 8,000만원 * (2억원×10%) + (198억원×20%) + (2,800억원×22%) + (1,000억원×25%)
	개정안 876억원 * (200억원×20%) + (3,800억원×22%)

(조세일보)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시점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대상	관할 주소지 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기부한도	1인당 연간 500만원
혜택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답례품(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기부금의 30%까지 지급

(행정안전부)



##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12가지 ①

### 1. 공통점을 찾아라!

누구나 자신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설득하기 마련이다.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선 우선 공통점을 찾아내 그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좋다.

### 2. 너무 말을 잘해도 마이너스

너무 말을 명료하게 잘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은 저자세로 상대방에게 당신을 웅변가가 아닌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돕고자 할 것이다.

### 3. 자신의 고민을 공개하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자신의 고민을 당신에게 공개하려고 할 것이다.

### 4. 유머 감각을 키우자.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 받는 존재가 된다.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긴장감은 웃음으로 완화될 수 있다.

### 5. 'No' 할 줄 알아야 한다.

너무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줄 모르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된다.  
자신이 하기 힘든 것은 미리 안된다고 거절할 줄 아는 결단력과 배짱이 필요하다

### 6. 고집 센 사람들은 이렇게!

고집 센 사람들은 의외로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 센 척 고집을 피우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외로움을 달래주면 쉽게 마음을 연다.

# 최 신 판 례 예 규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사전법규재산-369, 2022.03.30

## ■ 질 의

- '05.12.16. 인천 소재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19.2.13. 인천 소재 B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22.3.17. A주택 양도 및 B주택 취득

## 질의

- 같은 날에 보유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양도 및 취득 순서의 판정방법과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 ■ 회 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또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사전법규재산-96, 2022.04.11

## ■ 질 의

- '18.2.23.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7.10.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하였고, '20.7.16.에 「등록」됨

## 질의

- 분양권 상태로 '20.7.10.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3)\*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20.7.11.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함

##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7.10.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 상태로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1항제8호나목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 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재산-399, 2022.04.12

■ 질 의

- 1세대가 1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의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재건축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로 임대주택을 변경등록하고 재건축 후 주택가격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 경우
- 소득령§155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C) 양도에 대해 소득령 156의2⑤을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 기준시가 외 다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

■ 회 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른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되어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같은 영 제

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사용료 대가에 대한 다툼시 법원 판결로 대가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는 최종 판결일이 공급시기임

사업자가 사업상비밀 등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약정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사전법규부가-1897, 2022.04.13

■ 질 의

- 특정 제품 관련 사업상 비밀을 제공하고 판결확정에 따라 약정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

■ 회 신

사업자가 자기가 보유한 특정 제품 생산 관련 사업상 비밀을 거래처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액의 사업상 비밀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해당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대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모바일 실시간 소득파악 서비스 전면확대... 사업자 52만명 혜택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모바일 손택스 내 실시간 소득 파악 서비스를 11종에서 45종으로 전면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용근로자와 용역제공자, 인적용역사업자와 계약맺은 용역사업자는 매일 자신의 소득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소득자료 제출 기능이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 용역제공자(대리기사·캐디 등) 등에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로 확대된다. 혜택받는 사업자는 52만명에 달한다.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은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에서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로 확대된다.

자신의 소득자료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내 '복지이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도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관세청, 관세·물류분야 혁신기업 12개사에 정책금융 지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관세·물류 분야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12개사에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본부세관별로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중견 수출입물류 기업 등에게 신속통관과 세정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등 자체 지원 외에 추가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최초로 참여, 12개 혁신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금융위는 관세물류 분야에서 중소·중견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12개 사에 대출·보증·투자 측면에서 정책금융이 지원되고 후속투자 유치기회, 컨설팅 제공 등 비금융 지원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은 '관세물류' 분야를 ▲FTA 활용, ▲수출입 제조·물류·보세, ▲수출입 통관감시, ▲수출입 안전관리 4개로 세분화해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혁신성기술성과 더불어 FTA를 활용한 수출 가능성, 수출입통관 법규준수 우수도, 통관·감시 기술개발 등을 통한 관세행정 인프라 개선 기여도 등을 선정 요건으로 하면서, 관세행정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확인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나 '인증수출자'를 우선 고려해, 최종 선정기업 12개사를 확정했다.

관세청은 향후 주기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 성장성 등을 평가해 혁신기업을 재선정하는 'IN&OUT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규 업체에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IN&OUT제도는 혁신성, 성장가능성 등이 약화된 기업을 선정기업에서 제외(Out)하고, 신규 혁신기업을 선정(In)하는 제도를 말한다.

## 주식 양도세 상위 1%가 전체 소득 70%... 하위 20%는 0.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식양도세 대상자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18조6988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은 17조9998억원,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세금액은 3조9378억원이었다.

이중 주식 양도세 상위 1%의 과세 표준은 12조7371억원으로 전체 과세 표준의 70.8%를 차지했다. 세금도 전체의 72.7%인 2조8633억원을 냈다.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했다. 결정세액은 1억원이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들이 부담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들만 낸다.

상장 주식 종목은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주식 양도세 대상은 개미 투자자들과 거리가 멀뿐더러 주식 양도세 대상 중에서도 상하위간 격차는 크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를 관계없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이 넘는 사람에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다 2년간 유예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

#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2022. 10

-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10.19일 입법예고합니다.
  
-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비과세)이 적용됩니다.
    - 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조치로, '22.10.17일부터 '22.12.31일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 법인세법 §98② 및 소득세법 §156②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 등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세율인하 또는 영의 세율)을 적용 가능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내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22.9.2일)된 상황에서 금번 조치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금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고,
  -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22.9.29일)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 세계국채지수(WGBI)는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되어 있는 선진 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5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참 고**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영세율 적용 관련 사항**

**1. 영세율 적용 이유 및 기대효과**

- (추진이유) 국채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 필요
- (기대효과)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국채 금리 하락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 기대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 기대수익 증가\*로 외국인의 국채 신규 취득 및 기존 보유 외국인의 보유 지속 유인이 있음
    - \*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 세후수익률 상승으로 투자수요 증대

**2. 영세율 적용 시점**

- 영세율은 '22.10.17일부터 '22.12.31일까지 국채등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3.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과세 현황**

-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통해 분리과세 중
  - (이자소득) 조세조약에 따라 채권 이자에 대해 대체로 5~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 조세조약 미체결국은 14%(지방세 포함시 15.4%) 세율로 원천징수
  - (양도소득) 조세조약에 따라 대부분 면세되나, 예외적으로 4개국(홍콩, 룩셈부르크, 호주, 브라질) 법인 또는 거주자에 대해서 과세\*
    - \*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4. 내년 이후 비과세 적용 여부**

- 내년 이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해 이자양도소득 비과세하는 규정은 소득·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 22.9.2일 소득·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국채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  
(WGBI 편입국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국세청, 2022. 10

## 세정지원 대상

-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 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 2021사업연도('21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 근로기준법 § 43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3% 이상

## 세정지원 내용

-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 일자리 창출을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
  - \*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세정지원 배제

##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2. 11. 30.(수)

### '상시근로자 수' 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②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 ③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⑦ 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 '22년 최저임금(9,16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914,440원  
'23년 최저임금(9,62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2,010,580원

### '상시근로자 수' 등 우대

- '23년에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1명 → 2명) 부여(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부 준용

(청년)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고령자)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 '23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가 '22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며,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서식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 '17.1.1.이후 설립한 창업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 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인 법인
-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포함)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한 중소기업(본점 기준)
- 신청일 현재 수도권\*외 지역 소재 사업장의 고용증대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1.5명으로 계산(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는 별도 적용)
  - \* 조특법 §2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대 제외

### 계산방법 예시

[법인사업자]

####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2022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0	50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수도권 외	25	25	25	25	25	27	27	27	27	26	26	26

· 수도권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1.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50 + 50 + 50 + 50 + 51 + 51 + 52 + 52 + 52 + 52 + 52 + 52}{12} = 51.2\text{명}$$

· 수도권 외 평균 상시근로자 수 : 25.9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25 + 25 + 25 + 25 + 25 + 27 + 27 + 27 + 27 + 26 + 26 + 26}{12} = 25.9\text{명}$$

- 2023년(계획)

- 202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 '23.3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수도권외 1명)
- '23.5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 '23.7월 상시근로자 1명 퇴사(수도권 1명)
- '23.9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2	52	52	52	53	53	52	52	53	53	53	53
수도권 외	26	26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 수도권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2.5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52 + 52 + 52 + 52 + 53 + 53 + 52 + 52 + 53 + 53 + 53 + 53}{12} = 52.5\text{명}$$

· 수도권외 평균 상시근로자 수 : 26.8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26 + 26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12} = 26.8\text{명}$$

●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계산방법

○ 2022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 2022년 평균 청년 등 근로자 수 : 20.7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20 + 20 + 20 + 20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12} = 20.7\text{명}$$

○ 2023년

- 202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3.5월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23.9월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21	21	21	21	22	22	22	22	23	23	23	23

· 2023년 평균 청년 등 근로자 수 : 22.0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21 + 21 + 21 + 21 + 22 + 22 + 22 + 22 + 23 + 23 + 23 + 23}{12} = 22.0\text{명}$$

● 증가비율

구분	상시근로자			청년등 근로자	증가비율	
	소계	수도권	수도권 외		일반 {③+㉔+(㉕*0.5)}/①	청년창업등 {③*2+(㉕*0.5)}/①
2022년	77.1(①)	51.2	25.9	20.7	5.1%	6.2%
2023년	79.3(②)	52.5	26.8	22.0		
증가인원	2.2(③)	1.3(㉔)	0.9(㉕)	1.3(㉖)		

- 일반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비율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79.3명-77.1명)+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22.0명-20.7명)+수도권외 증가인원((26.8-25.9)×0.5)} ÷ 22년 상시근로자수(77.1명)
- 청년창업·강소기업 일자리 창출비율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79.3명-77.1명)×2+수도권외 증가인원((26.8-25.9)×0.5)} ÷ 22년 상시근로자수(77.1명)
- \* 청년 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계산방법 예시

(개인사업자(주사업장 '수도권' 소재))

● 2022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50	50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 2022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1.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50 + 50 + 50 + 50 + 51 + 51 + 52 + 52 + 52 + 52 + 52 + 52}{12} = 51.2\text{명}$$
- 2022년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20.7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frac{20 + 20 + 20 + 20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12} = 20.7\text{명}$$

● 2023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2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3.5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청년근로자 1명 포함)
'23.9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청년근로자 1명 포함)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52 (21)	52 (21)	52 (21)	52 (21)	53 (22)	53 (22)	53 (22)	53 (22)	54 (23)	54 (23)	54 (23)	54 (23)

· 2023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3.0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52 + 52 + 52 + 52 + 53 + 53 + 53 + 53 + 54 + 54 + 54 + 54}{12} = 53.0\text{명}$$

· 2023년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22.0명 (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frac{21 + 21 + 21 + 21 + 22 + 22 + 22 + 22 + 23 + 23 + 23 + 23}{12} = 22.0\text{명}$$

● 증가인원 수 : 1.8명 (53.0명 - 51.2명)

● 증가비율 : (3.1명 / 51.2명) × 100 = 6.0%

○ 3.1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53.0-51.2 = 1.8명)

+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가중치 [(22.0-20.7)\* × 1 = 1.3명]

\* 청년 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청년창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 증가인원 수 : 1.8명 (53.0명 - 51.2명)

● 증가비율 : (3.6명 / 51.2명) × 100 = 7.0%

○ 3.6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53.0-51.2) = 1.8명] × 2

#### 계산방법 예시

(개인사업자(주사업장 '수도권외' 소재))

● 2022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50 (20)	50 (20)	50 (20)	50 (20)	51 (21)	51 (21)	52 (21)	52 (21)	52 (21)	52 (21)	52 (21)	52 (21)



· 2022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1.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50 + 50 + 50 + 50 + 51 + 51 + 52 + 52 + 52 + 52 + 52 + 52}{12} = 51.2\text{명}$$

· 2022년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20.7명 (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frac{20 + 20 + 20 + 20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12} = 20.7\text{명}$$

● 2023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2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3.5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청년근로자 1명 포함)
- '23.9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청년근로자 1명 포함)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청년·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수)	52 (21)	52 (21)	52 (21)	52 (21)	53 (22)	53 (22)	53 (22)	53 (22)	54 (23)	54 (23)	54 (23)	54 (23)

· 2023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3.0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52 + 52 + 52 + 52 + 53 + 53 + 53 + 53 + 54 + 54 + 54 + 54}{12} = 53.0\text{명}$$

· 2023년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22.0명 (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frac{21 + 21 + 21 + 21 + 22 + 22 + 22 + 22 + 23 + 23 + 23 + 23}{12} = 22.0\text{명}$$

● 증가인원 수 : 1.8명 (53.0명 - 51.2명)

● 증가비율 : (4.0명 / 51.2명) × 100 = 7.8%

○ 4.0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53.0-51.2 = 1.8명)

+ 수도권외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가중치 [1.8명 × 0.5 = 0.9명]

+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가중치 [(22.0-20.7)\* × 1 = 1.3명]

\* 수도권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가중치, 청년 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청년창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 증가인원 수 : 1.8명 (53.0명 - 51.2명)

- 증가비율 :  $(4.5명 / 51.2명) \times 100 = 8.7\%$ 
  - $4.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53.0-51.2) = 1.8명] \times 2$   
+ 수도권외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가중치 [ $1.8명 \times 0.5$ ]

### 기타 참고사항

-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22년 대비 2023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 예시) 2022년 6월말 법인의 경우 2022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23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①·②·④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예시) 1.46명 → 1.5명
-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⑤ 최종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 예시) ⑤ 최종 증가비율 5.12% → 5.1%
-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 예시) 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 합병·분할법인등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합병법인
  - 합병(수도권 소재)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22.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10
피합병법인	40	40	40	40	-	-	-	-	-	-	-	-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 2022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계산 : 67.5명

$$\frac{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70}{12} = 67.5명$$

\*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2023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70명

$$\frac{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12} = 70\text{명}$$

\*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증가인원 수 : 70명 - 67.5명 = 2.5명
- 증가비율 : (2.5명 / 67.5명) × 100 = 3.7%

● 분할법인

- 분할(수도권 소재)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22.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70
분할신설법인 (판매부문)	-	-	-	-	40	40	40	40	40	40	40	40

\* '22.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제조관련 사업부문 60명, 판매관련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청년 등 근로자 수 증가인원 없음)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 2022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계산 : 67.5명

$$\frac{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70}{12} = 67.5\text{명}$$

- 2023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70명

$$\frac{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12} = 70\text{명}$$

- 증가인원 수 : 70명 - 67.5명 = 2.5명
- 증가비율 : (2.5명 / 67.5명) × 100 = 3.7%

# 해외 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직원 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불공정 탈세 혐의 검증 (99명 세무조사)

- 국세청, 2022. 10

- (착수 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자산가들은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고액자산가 및 자녀 99명이며, 선정 유형은
  - ① (해외 이민 가장) 사실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와
    - (사망 사실 은닉)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국내 재산을 부친 명의로 계속 관리하면서 사망 사실을 은닉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자,
    - (국내 재산 편법 증여) 국내 거주 중인 자녀 등에게 국내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 등을 누리도록 한 해외이주자 등 21명
  - ② (직원 명의 차명계좌 이용)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직원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
  - ③ (허위·통정 거래)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 57명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 1 착수 배경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되,



-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 특권 탈세 등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근, 고물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과세당국에 쉽게 노출되는 부동산·주식 등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 해외 이주자 신분을 이용하여 상속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 차명 금융자산 및 부실 법인 등을 거래 과정에 이용하는 등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가장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자녀 세대에 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이주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 고액자산가의 다양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하여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2 조사대상자 99명

□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Ⅲ 해외이주자 관련 : 21명 (사례 ①-④ 참조)

- 해외이주 신고 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 재산을 반출하였으나,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 해외 자금 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외환 송금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와

<b>사례 ①</b>	<b>해외이주비 명목으로 재산 반출 후 자녀에게 증여</b>
-------------	-----------------------------------

- ◆ 해외이주를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자가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 재산 반출
  -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력이 없음에도 국내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부친이 반출한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

<b>사례 ②</b>	<b>해외 외환 송금을 통한 편법 증여</b>
-------------	---------------------------

- ◆ 해외에서 국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친이 자녀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국내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재이체

- 자녀는 해외에서 근무 및 사업 이력 등이 없음에도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 해외 이주 후 해외에서 사망하였으나 보유 중인 국내 재산을 계속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여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

<b>사례 ③</b>	<b>해외이주자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b>
-------------	----------------------------------

- ◆ 해외이주자가 이주 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하였음에도,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  
이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 등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  
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국내에 거주하는 친인척 등에게 국내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누리도록 한 해외이주자 등 21명

<b>사례 ④</b>	<b>해외이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변칙 증여</b>
-------------	---------------------------------

- ◆ 부동산임대업자인 A는 해외이주 후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국내 임대 소  
득이 발생함에도 해외송금 등 국내 재산 반출 내역이 없음
  -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 등이 해외이주자의 국내 재산을 관리하면서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누림

**㉑ 직원 명의 차명계좌 이용 : 21명 (사례 ⑤ 참조)**

-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직원 등의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  
회 증여한 혐의자 21명

<b>사례 ⑤</b>	<b>기업 자금 유출 후 직원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b>
-------------	--

- ◆ 제조회사 A 법인 사주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공 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법인 소득을 누  
락한 후 그 자금을 유출하고, 동 자금을 직원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
  -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금융 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에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㉒ 허위·통정 거래 : 57명 (사례 ⑥-⑦ 참조)**

-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 법인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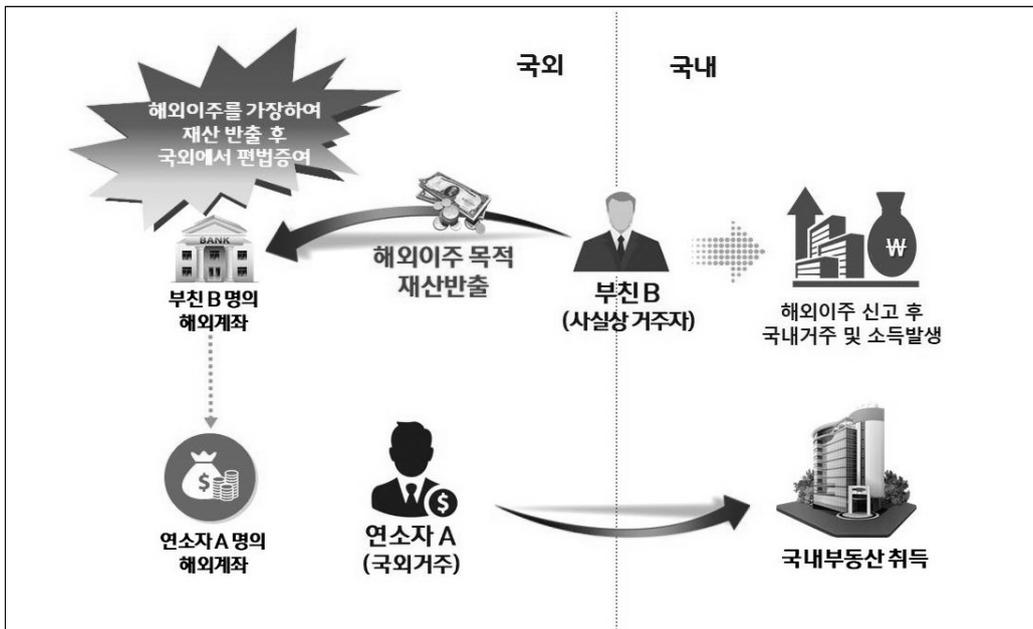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사례 1**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국내 재산 반출 후 국외에서 편법 증여**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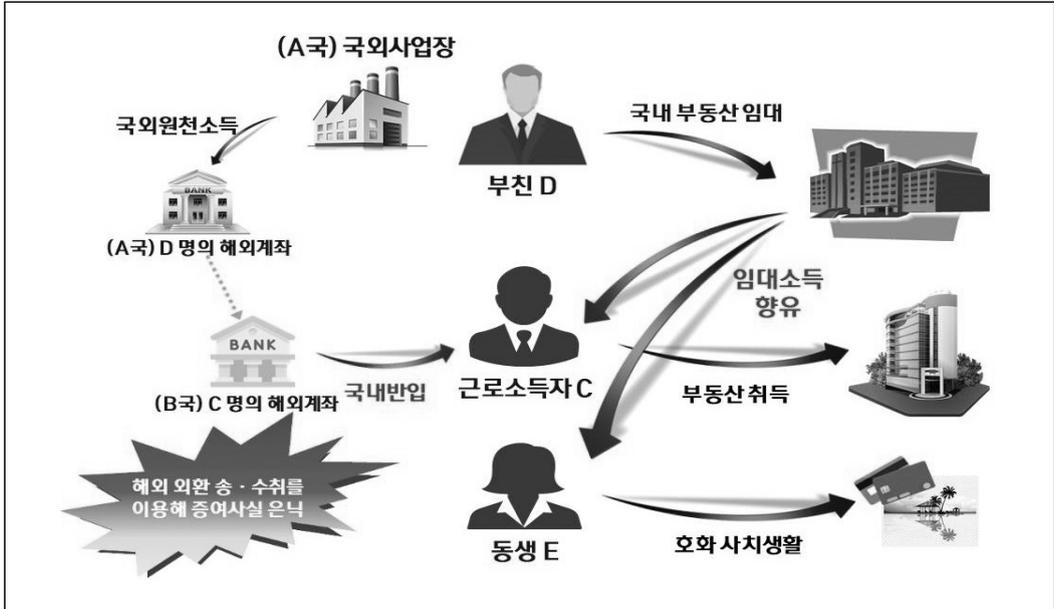
- 국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 A가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억 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어 분석한 결과,
- 부친 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됨
  - 부친 B는 반출한 자금으로 국외 자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연소자 A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부족
- 부친 B가 비거주자로 가장하여 연소자 A에게 국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혐의
  - \* 수증자 및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고, 국외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없음

□ 조사 방향

-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부친 B에 대해 증여세 조사 착수
  -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 예금을 증여받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 사례 2 해외 외환 송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 주요 혐의내용



- 근로소득자 C가 소득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사업 이력 등이 없음에도 본인의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있어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 해외에서의 자금 거래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부친 D로부터 본인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 받은 후, 국내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확인됨
- 또한, 동생 E 역시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매년 고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소득자 C 및 동생 E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동시 착수

### 사례 3 해외이주자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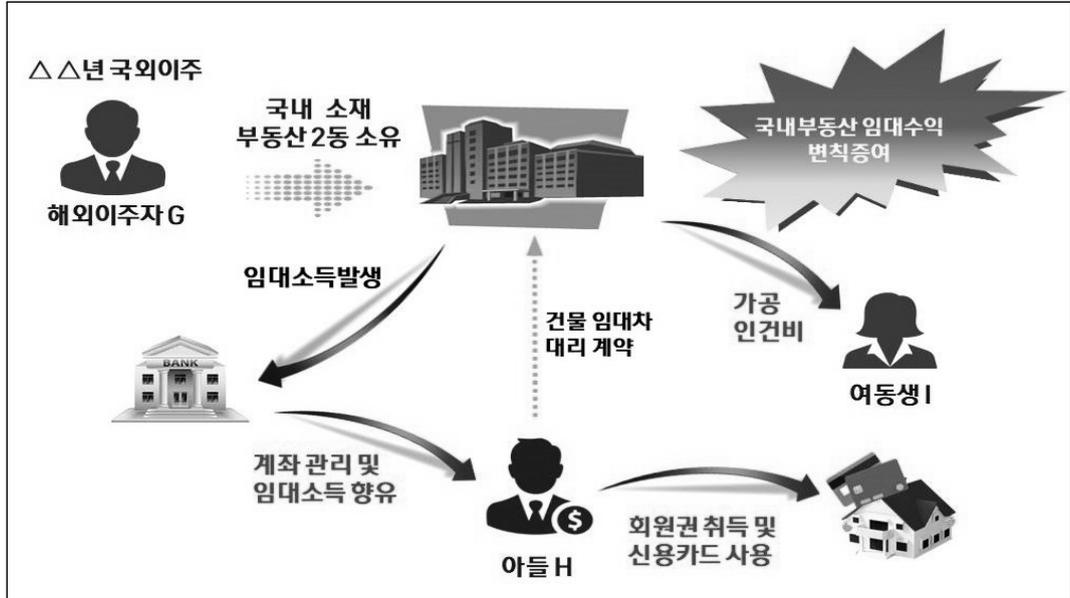
- 해외이주자 F가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고, 국내 보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거나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어 자금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 F는 이주 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하였음에도,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해외이주자 F)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 임대 소득과 관련된 부가세·소득세 등 관련 제제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가 확인됨
- 또한, 사망 전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자녀 등이 누리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있음

#### □ 조사 방향

- 국내 거주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포함하여 해외이주자 F에 대한 상속세 조사 착수

사례 4 해외이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변칙 증여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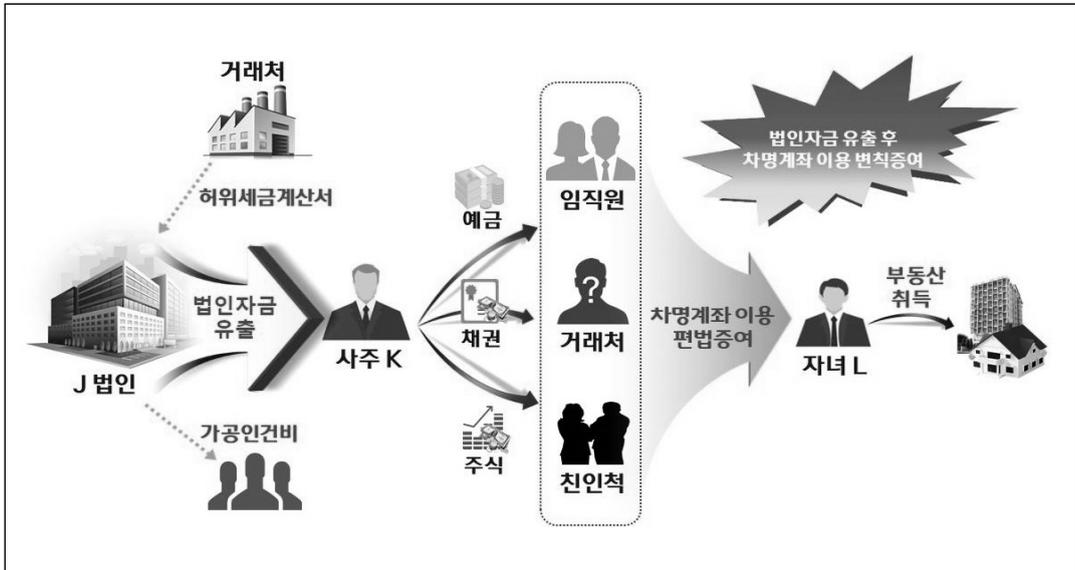
- 해외이주자 G의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비해 해외송금액이 미미하여 자금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 아들 H가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임대 소득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유용하고,
  - 최근 몇 년간 입국 사실이 없는 해외이주자 명의로 콘도회원권, 급 외제차 등을 취득하여 H가 사용한 혐의가 확인됨
- 또한, 임대 사업장에 근로사실이 없는 여동생 I 명의로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임대 소득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아들 H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가공 인건비 계상을 통한 소득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해 해외이주자 G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동시 착수

**사례 5** 법인자금 유출 후 임직원·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영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

□ 주요 혐의내용



- 제조회사 J 법인 사주 K는 소득 및 자금 원천 대비 고액의 부동산 취득 등 재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공 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법인 소득 〇〇억 원을 탈루하고 해당 자금을 유출하여,
  - 동 자금을 임직원·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하면서 탈루 사실을 은닉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확인됨
- 또한, 사주 K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 수익 〇억 원에 대한 금융 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 L에게 증여하여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사주 K 및 자녀 L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J 법인의 법인세 누락혐의 확인을 위한 법인 통합조사 동시 착수

사례 6

특수 관계 부실 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장·양도하여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 건설업자 P는 △△년 전 취득한 토지를 특수 관계법인 Q에게 취득가액과 유사한 〇〇억 원에 양도하고,
- 특수관계법인 Q가 동 토지를 단기에 제3자인 부동산 개발업체에 〇〇〇억 원에 재양도 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Q는 결손법인으로 법인세 무납부
- 탈루 혐의 분석 결과, 특수 관계법인 Q는 부동산 취득 자격이 없는 결손법인으로, 건설업자 P로부터 거래대금 〇〇억 원을 미리 수취 후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 실제 건설업자 P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직접 양도하였음에도 거래 중간에 부실 법인을 끼워 넣어 실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 조사 방향

- 건설업자 P의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직접 양도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착수

#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 국세청, 2022. 10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보유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 \*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49종의 서비스 중 45종 제공(종전 11종)
  - 확대된 모바일 서비스는 앱(손택스)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복지이음」 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앱 설치 없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여 이용
  - (자료제출) 종전에는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와 용역제공자(대리기사·캐디 등)의 소득자료만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약 52만 명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인소득 확인)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하여,
    - 장시간 운전·골프장 내 이동 등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양한 편의기능) 이 외에도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 PC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 1 추진 개요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 시행으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어 자료 제출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소득자료 미제출 신고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RTI)」이란?

- (의미)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 적기 파악을 위해 소득자료 매월 수집
- (소득파악 대상) 건설직 근로자 등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 \* 인적용역사업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대리기사·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
- (성과) 매월 약 700만 명의 비정형 근로자 소득자료 수집, 고용보험 신규 가입 67만 명 지원

○ 그러나, 소득자료 제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총 49종)가 PC 홈택스로만 제공되어 업무환경 상 PC 사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일용근로자·용역제공자 등 소득자의 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휴대성이 뛰어난 스마트폰을 통해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기능을 전면 확대\*하였습니다.  
\*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49종의 서비스 중 45종 제공(종전 11종)

□ 확대된 모바일 서비스는 ' 22. 10. 13(목)부터 앱(손택스)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복지이음」 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앱 설치 없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여 이용  
 < 모바일 서비스 확대 주요 내용 >

※ **일용** 일용근로자, **인적** 인적용역사업자, **용역** 용역제공자

현행	서비스명		확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b>일용</b></span> <span><b>용역</b></span> </div>	소득자료 제출	정기제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b>일용</b></span> <span><b>인적</b></span> <span><b>용역</b></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span><b>일용</b></span> </div>		수정·기한 후 제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b>일용</b></span> <span><b>인적</b></span> </div>	본인 소득내역 확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b>일용</b></span> <span><b>인적</b></span> <span><b>용역</b></span> </div>
불가	근로부인 신청 및 미·허위제출 신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b>일용</b></span> <span><b>인적</b></span> <span><b>용역</b></span> </div>

## 2 주요 내용

### 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소득자료 모바일 제출

- (정기제출) 종전에는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아르바이트 등)와 용역제공자(대리기사·캐디 등)의 소득자료만 가능했던 모바일 정기제출(기한 내 제출) 기능을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매월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약 52만 명, 특히 제출할 인원이 적어 모바일 제출이 용이한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정·기한 후 제출) 시간과 장소 제약 등으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기존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만 가능했던 모바일 수정·기한 후 제출 기능을 인적용역사업자·용역제공자 소득자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매월 소득자료를 보완 제출하는 사업자 약 1.4만 명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소득자료 모바일 제출 |

##### [이용 방법]

- ① 아이디, 공동인증서 등으로 접속
  - 접근경로: 신청제출 ⇨ 복지이음
- ② 소득자료 선택하여 제출
  - ※ 소득자료별 모바일 제출방법 도움자료 제공

### ② 소득확인부터 미·허위제출 신고까지 모바일로 한 번에

- (본인 소득내역 확인) 건설 현장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만 이용 가능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 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육실종사원
- 이를 통해 장시간 운전·골프장 내 이동 등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부인 신청 및 미제출 신고) 제출된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근로부인 신청’, ‘지급명세서 미·허위제출 신고’ 기능을 모바일로 확대하여,
  - 기존에 모바일로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신고를 위해서는 PC 홈택스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③ PC 홈택스의 다양한 편의 기능을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

- (MY홈택스 기능) 실시간 소득과약 관련 MY홈택스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자료 제출 내역, 근로부인신청 처리결과 등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가 원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건비 간편제출 기능) 스마트폰으로 소득자료를 일일이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제출된 소득자 인적 사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인건비 간편제출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소득자 인적 사항을 한 번만 등록하면 매월 자동으로 불러와 제출할 수 있는 기능
- 이를 통해 세무대리인이 없거나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류·중복제출 원천 차단) 올해 8월 PC 홈택스에 먼저 도입된 「소득자료 오류·중복제출 원천 차단 시스템\*」을 모바일 홈택스에도 적용하여 정확한 소득자료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미등록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오류자료나 중복자료 제출 시 알림 메시지와 함께 정정 화면으로 안내
- (각종 도움자료 제공) 사업자와 소득자가 새롭게 확대되는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제출 방법 안내영상, 소득자료 점검표(소득자 유형 선택 체크리스트\*)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소득자료를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도 정확한 소득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림창

##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자가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의 복지행정 지원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 금융감독원, 2022. 10

## I 개요

-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新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
  - 본통지(11.11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2년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 지난 7.15. 금융위가 발표한 지정제도 보완방안(' 22.9.29. 개정된 외감규정 시행)에 따라 개편된 회사 및 감사인군 등을 적용하였음

※ 지정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

- ① (기업·감사인군 분류기준 개선) 지정군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회사군 '가'군 범위를 확대(5조이상 → 2조이상), 감사인군은 분류기준을 강화\*
  - \* 품질관리담당자 수 기준 상향, 손해배상능력을 보험금으로 변경 등
- ② (감사품질의 지정 연계) 회계사수 기반의 감사인 점수에 감사인감리 결과와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반영
- ③ (지정방법 개선) 동일군 내 재지정 도입 및 감사위험이 높은 직권지정사유(3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감리조치 등)의 하향재지정 제한\*
  - \* 감사위험과 연관성이 낮은 주기적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 등은 하향재지정제 유지
- ④ (일반 회계법인 우선 지정) 일반 회계법인(미등록 감사인)이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지정신청할 경우 비상장사 2사를 우선 지정
- ⑤ (시행시기) 품질관리인력요건\*(감사인군 분류기준)과 감사인감리 결과반영\*\* 등 유예사항을 제외한 개선내용은 금융위 의결('22.9.28.) 후 즉시 시행
  - \* '나'군의 140% 이상과 '다'군의 120%이상 요건을 6개월 유예
  - \*\* 규정개정 이후 감사인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반영



### 지정제도 개요 (붙임 참조)

- ◇ (주기적 지정)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50%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 ◇ (직권 지정)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시 외부감사인을 지정

## II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 1 사전통지 전체 현황 (1,498사)

- 금번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498사(상장 1,110사\*, 비상장 388사)로 전년 동월(1,578사\*\*) 대비 80사 감소
  - \* 유가 363사+코스닥 688사+코넥스 59사    \*\* 1,578사 : 상장 1,217사, 비상장 361사
- 이중 607사는 '22년에 지정사유가 신규 발생한 회사이며, 891사는 전년 발생 지정사유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임
  - \*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지정됨

#### '22.10월 사전통지 현황

(단위: 사)

구분	상장			비상장			합계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주기적 지정	166	356	522	63	80	143	229	436	665
직권 지정	209	379	588	169	76	245	378	455	833
합 계	375	735	1,110	232	156	388	607	891	1,498

### 2 주기적 지정 현황 (665사)

- (신규 지정: 229사) 상장사 166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3사 등 229사\*\*가 신규 지정
  - \* 주기적 지정대상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순으로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 (분산지정)
  - \*\* 12월말 외 결산법인으로 旣 지정된 10사(상장 8사, 비상장 2사) 포함시 금년 중 주기적 지

정은 239사

-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2.9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7.2조원, 코스닥시장은 2천7백억원 수준
    -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36사, 5천억~2조원미만: 46사 등
  - 시총 상위 100사 중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포함되었으며, 유가증권시장 87사코스닥시장 79사임
  - 비상장사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소유경영미분리 대형회사\*(63사)에 대하여 주기적 지정을 실시
    - \* 주기적 지정대상의 쓸림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순으로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 (연속 지정: 436사) '20~' 21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436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으로 2~3년차 감사인 연속 지정
  - \* 주기적 지정된 회사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 등을 제외

### 3 직권 지정 현황 (833사)

- 금년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378사이며, 455사는 전년 지정사유 발생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감사인 지정
  - 지정사유별로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이 352사, 상장예정 182사, 관리종목 119사 등의 順이며,
  - 상장사(코넥스 포함)가 209사\*, 비상장사는 169사가 신규로 직권 지정사유가 발생
    - \* 유가증권시장 상장 53사, 코스닥시장 상장 97사 및 코넥스 59사

'22.10월 감사인 지정 현황(사전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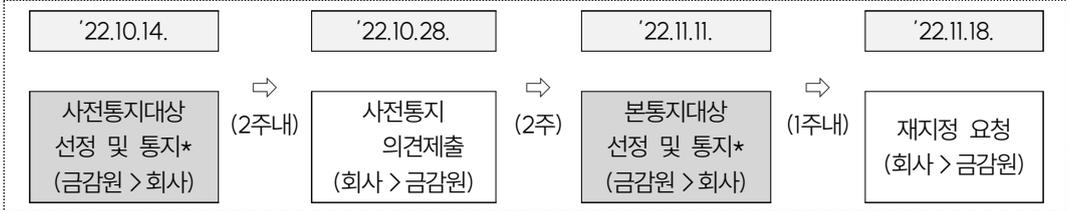
(단위: 사)

지정사유*		회사수		
		신규	연속	총합계
주기적지정		229	436	665
직권지정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163	189	352
	상장예정	165	17	182
	관리종목	7	112	119
	최대주주(3년간 2회 이상)/대표이사(3회 이상) 변경	10	40	50
	감리조치	16	26	42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	27	27
	회사요청	-	22	22



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3년 사업연도 지정일정**



\*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1~2일 후 수령 예상

**2 외부감사인**

-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
  -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 \* 지정감사인은 전자문서교환시스템(<http://edes.fss.or.kr>)를 통하여 의견 제출
- 또한, 지정감사인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참고] 모범규준 주요내용**

- ❶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 ❷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 ❸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 ❹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 ❺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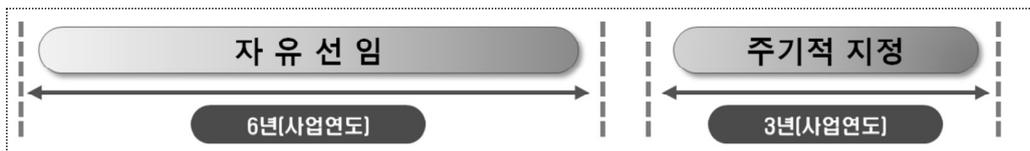


## IV 향후 계획

-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반영하여 11.11일에 본통지할 예정
  - 회사·지정감사인은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 \*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 한편, 지정보수협약에 난항을 겪어 기한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며
  - \* 연장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2주 내외 추가기한 부여
  - 과도한 지정감사보수 요구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감원·한공회)」에서 적극 대응하고
  -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
    - \* 부당행위 신고 처리절차 : 신고 → 자율조정 → 지정취소 → 협의체조사 → 지정제외접수 부과 및 징계부과(한공회)

## 붙임1 감사인 지정제도

- ①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 (주기적 지정)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함
    -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직권 지정)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직권 지정사유) 감사인을 지정
  - ※ 新외감법 개정으로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 등 직권지정사유가 확대

구분	주요 직권지정 사유
기존 지정사유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관리종목, ⑥횡령·배임 발생 등
신설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 負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 볼드체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

② 지정시기(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외감규정 별표 2) :

- (주기적 지정) ' 22.9.1.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을 ' 22.10.14. 선정하여 지정결과에 대해 사전통지\*하고,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4주 후에 본통지\* 함
  -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수령은 추가 시일이 소요
  - ※ 회사와 회계법인은 9월 2주 이내에 지정관련 자료를 제출
- (직권 지정)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및 회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고자 사업연도 개시 전\*(다음 사업연도)에 지정
  - \* 단, 상장예정법인, 회사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등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지정
  -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지정기준일)에 감사인 지정사실을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지
  - 본통지 4주 전에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지정예정내용을 알리고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③ 감사인 지정방법(외감규정 별표 4)

-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 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 \text{감사인 지정점수} = \frac{\text{감사인 점수}}{1 + \text{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

1) 지정받은 회사의 자산총액 가중치 : 2조원 이상인 경우 3배, 5천억원~2조원 2배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외감법 시행령 제17조)**

※ 아래 ①, ②, ③의 재지정 사유는 지정 1년차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정사유에 따라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 지정 2·3년차에는 동 사유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

①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상향 재지정)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나군	나군	가군	-	-
다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가군	가~나군	가~다군

②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하향 재지정)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나군을 재지정요청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나군	가군	나군	-	-
다군	가군	나군	나~다군	-
	나군	-	다군	-
라군	가군	나군	나~다군	나~라군
	나군	-	다군	다~라군
	다군	-	-	라군

\* 요청 가능 지정사유 : 회사요청(법§11①1호), 주기적 지정(법§11②), 상장예정(영§14⑥1호)

③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동일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동일군 재지정)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	나군을 재지정요청	다군을 재지정요청	라군을 재지정요청
나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	-	-	라군

- ④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연결 지배종속회사(둘다 지정감사시)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⑥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 ⑦ 외국인투자회사 중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등